

「2022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고용창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현장애로해결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남 중소·중견기업의 현장애로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창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현장애로해결 컨설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26일
창원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위기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현장애로를 적극 해결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 도모
- 사업명 : 2022년 (고선패)고용창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5. ~ 2022. 12. (8개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 모집기간 : 2022. 5. 26.(목) ~ 예산소진 시까지
- 모집대상 : 경남 소재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

① 위기산업(기계·자동차·항공) 관련 기업

산업구분	업종	코드	분류
기계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중분류
자동차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항공산업	항공부품제조 등 운송장비 제조업	C313	소분류

※ 위 업종에 포함되지 않을 시, 해당 산업에 관련된 부품이나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증빙 필수(담당자 상담 후 증빙자료 제출必)

- ②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
- ③ 평균 매출 3억 이상(2020, 2021년 재무제표 기준)
- ④ 2022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수혜 중인 기업은 지원 불가

< 기업 규모 예외 요건 >

* 단,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사업주 단위), 연매출 3억 이하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②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 ③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 신규채용 기업 우대

- 정규직 1명 이상 신규채용 기업은 차년도 사업에 가산점 반영
- 신규채용은 약정체결 이후부터 2022년 12월까지 채용 및 고용유지 필요
※ 붙임 2의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추가 제출 요망

< 신규채용 불인정 사항 >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 제8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2.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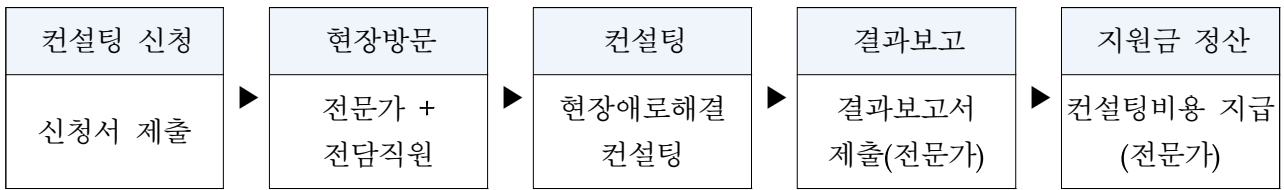
- 기업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전문가 매칭,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 경남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사업기획 및 전략수립, 판매 및 마케팅, 기타사항(경영 전반의 애로사항 포함)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별 맞춤형 전문가 매칭 지원

■ 세부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기업당 지원한도	선정방법
일반컨설팅	- 성장계획 수립, 경영, 법률, 노무, 세무, 수출, 마케팅 등 기술 외 컨설팅	1,000천원 이내 (기업부담 없음) ※최대 4회 이내	수시
기술컨설팅	- 기업의 현장애로에 대하여 신속·즉시 해결 가능하도록 상담 및 컨설팅 지원		

3. 지원절차 및 방법

■ 지원절차



■ 지원방법

- 공고 모집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 유도
- 기업의 현장애로를 분야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맞춤형 지원(수시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5. 26.(목)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E-mail 제출(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 E-mail : kyk6020@cwip.or.kr (김유경 사원 / 055-716-8527)
- 주 소 : (5139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31, KCL B동 2층
고용안정지원 교육센터

■ 제출서류 ※PDF 또는 HWP 파일로 제출

번호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신청서 및 약정서	각 1부	서식 1, 2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3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1부	해당 시

5. 유의사항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사전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간 경과,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 임금을 체불하고 있거나 고용 보험료 및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사업 수혜기업 중복 불가
- 고용노동부 채용장려금 사업 중복 불가(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능)
- ※ 기타 지원사업 중복 여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원 제한', '지원중단'에 처함
- 소정의 양식은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wip.or.kr) 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6.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창원산업진흥원 인력양성팀	이희진 선임연구원	055-716-8522	heejin@cwip.or.kr
〃	김유경 사원	055-716-8527	kyk6020@cwip.or.kr

- 붙 임 1. 현장애로해결 컨설팅 표준서식 1부
 2.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1부. 끝.